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046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및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대학별 간접비 고시비율을 확정하여 고시하고, 2023년도 개정 사항 중 일부에 대한 유예기간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회의비 사용 기준에 대한 유예기간 설정(안 부칙)
- 나. 대학 간접비 고시비율 변경(안 [별표 6])

3. 의견 제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년 2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 제출하는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제도혁신과
  - o 전화 : 044-202-6957 (Fax: 044-202-6048)
  - o E-mail : hissoti@korea.kr
  - o 주소 : (30109) 세종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 4.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s://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